

1. 연구윤리는 왜 중요할까?

1. 학습목표

1. 연구윤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고 올바른 연구수행을 위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2. 학습하기

1. 연구윤리의 의미와 중요성

(1) 연구윤리의 정의와 개념¹⁾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태도로 바람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또는 행동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윤리의 실천은 바람직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 절차상의 투명성과 연구 내용의 정직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연구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서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일반적으로 FFP라고 함] 등 의도적인 연구부정행위 없이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수행은 학문 분야에 따라,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혹은 방법에 따라 그 범주가 다양하고 특수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학문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해 반드시 연구윤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의 대두 배경²⁾

연구자의 연구활동은 오늘날 삶의 방식이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최근 학문발달의 산물과 관련된 이슈들, 이를테면 환경 경제성 평가, 아동심리, 저널리즘 등은 인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아 이에 대한 주의 깊은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형태의 변화도 연구윤리를 대두시킨 배경이 된다. 과거에는 주로 개별 활동 형태

1) 이인재, 「연재1. 연구윤리, 왜 필요한가?」,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10권, 2012, 195-196쪽.
2) 이인재, 「연재1. 연구윤리, 왜 필요한가?」,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10권, 2012, 196-198쪽.

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주로 연구 사업단에 의해 또는 여러 연구 집단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지원이 주어졌으나 오늘날에는 일부 특정한 연구 과제만이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구 활동 전반에서 연구자의 책임과 연구자가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쟁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 연구윤리의 원칙³⁾

연구윤리는 연구활동에서 연구자 사회적 책임에 따라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학문분야나 연구기관에 따라 윤리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동일하다. 미국의 연구윤리학자 레스닉(D. B. Resnik)은 많은 영향력 있는 연구기관에서 추구하는 윤리적 지향점을 조사하여 도출한 윤리원칙(ethical principles)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정직함(hones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방법과 절차, 출판상황, 참여자의 기여도, 이해충돌의 가능성 등에 대해 정직하게 보고해야 한다. • 논문, 보고서, 연구비 신청서 등에서 데이터를 날조, 변조하거나 왜곡하여 제시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는 연구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비편향적이며 정직해야 한다.
객관적 타당성(obje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계획, 데이터 분석과 해석은 물론, 논문심사, 연구비 신청, 전문가 진술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개방과 수용(open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는 데이터, 결과, 방법, 아이디어, 기법, 도구, 재료 등을 공유해야 한다. 다른 연구자들의 비판을 수용하는 한편,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비밀준수(confidenti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심사와 연구비 제안서 등은 물론, 기업과 군사의 기밀사항 그리고 연구대상자(피실험자)의 개인기록에 대한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기준 및 사례집』. 2013, 6-8쪽.

<p>주의깊음(carefulne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는 본인뿐 아니라 동료의 연구 수행 과정이나 결과 제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야 한다. • 데이터 수집, 실험디자인, 피험자 동의 확보, 논문투고 후 교신 등의 연구활동에서 철저히 기록을 남겨야 한다.
<p>동료의 존중 (respect for colleagu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 학생 그리고 부하 연구원을 존중해야 한다. 동료에게 해를 가하지 말고, 공정히 대우해야 한다. 성, 인종, 종교 등 과학적 소양과는 무관한 이유로 동료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세대 연구자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며 도와야 한다.
<p>지식재산의 존중 (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존중해야 한다. 타인의 발표되지 않은 데이터, 방법 또는 결과를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인용을 한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하며, 표절해서는 안 된다.
<p>준법 (respect for the la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활동에 적용되는 법규 및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p>실험대상의 존중 (respect for subjec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대상에 대해서 적절한 존엄성을 가지고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 필요하지 않거나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혜택을 최대화해야 한다. 인권, 사생활,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p>자원의 관리 (stewardsh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경제적, 기술적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 자원, 도구, 샘플, 연구현장을 잘 관리해야 한다.
<p>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컨설팅, 전문가증언, 대중교육과 적극적 지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결실이 유발되도록 애써야 한다.

자유(freedom)

- 과학자의 사고와 탐구의 자유는 연구기관과 정부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윤리원칙을 두는 것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정확한 행동방향을 찾기 위해서이다. 연구활동의 모든 상황을 규범적 문서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규범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봉착한다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윤리원칙을 되새겨 봐야 한다.

(4) 연구윤리의 중요성⁴⁾

연구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최소한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 또는 표절 등 거짓과 속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인간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일 경우 그 연구 대상을 존중하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은 바로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도리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도리를 위반하면서까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개인의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단지 연구윤리를 위반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옳은 연구 방향인지를 잘 모르거나 혼란스러울 때, 연구자 개인으로 하여금 명확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안내해 주고, 연구부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로부터의 유혹을 떨쳐 버리게 함으로써 연구자가 진실하고 당당하게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윤리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연구가 수행될 때,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신뢰하고 이에 보태어 본인의 연구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으며 나아가 학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1)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⁵⁾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가 가지는 장기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현대에 와서 연구가 활발해지고, 과학기술이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즉, 연구자의 연구 과정이나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연구자에 의해 생산된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 그리고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은 전문직 윤리와도 겹치는 부분으로서, 공공자금을 이용한 연구

4)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10-13쪽.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사례집』, 2012, 11-12쪽.

가 공공성을 담보했는가, 연구비를 적절한 용도에 합당하게 사용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이나 결과의 활용에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즉,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와 행동이 요구될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적 책임의 이유⁶⁾

1) 연구의 중립성

학문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가 가치중립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많은 문제가 있다. 연구의 결과는 언제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때문이다.

같은 기술이라도 잘 사용하면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 자체만 보아서 그 용도와 무관하게 중립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점점 더 많은 연구가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 특정 단체나 정부와 연관되어 이루어진다는 점도 연구의 중립성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공적자금이 연구에 사용되는데, 이 때 연구비를 제공하는 주체, 즉 기업이나 정부, 이익단체 등의 목표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로 연구를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예측하기 힘든 결과들

현대 과학기술이 대형화되고 그 시공간적 범위가 넓어지면서 좋은 의도로 개발한 연구 성과들조차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경제개발을 위해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경제성 평가의 여러 시도들이 장치 환경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예측하기 힘든 결과들이 단지 물질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결과들로 전이된다는 데 있다.

이렇듯 경제성 평가의 여러 시도들이 예측하기 힘든 결과들을 양산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지만, 결과를 예측하고 숙고해보는 여유를 허락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발전만을 추구하는 태도도 문제다.

과학기술의 장기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과학기술의 결과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은

6) 손화철, "사회적 책임의 이유", <연구윤리정보센터>. 2012. 02. 21., <http://www.cre.or.kr/article/responsibilities_articles/1382501>(접속일자:2016. 01. 06)

바로 이러한 자각에서 비롯된다.

3) 연구결과의 실질적 영향력

모든 연구의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 지식기반사회의 특징은 그 영향력이 극대화되어 있다는데 있다.

사회학적 연구의 결과는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즉각 연결되어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에 관한 연구를 예로 들자면, 실태조사의 결과에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 교육정책과 청소년 정책, 나아가서 컴퓨터 관련 각종 규제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과거의 인간 행위는 인간을 초월하는 자연을 배경으로 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대자연의 힘과 법칙을 이길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현대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인간은 이제 자연을 통째로 파괴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은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연구자의 독점적 전문성

연구자들의 전문 지식은 나날이 세분화되어 이제 어느 학문 분야에서건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 적절성은 논외로 쳐야 하겠지만, 전문적 지식에 사회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해당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전문가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된 사회들에서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 모든 영역에 파고들어 있음에도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로 끊임없이 통화를 하고 텔레비전 시청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아는 이는 거의 없다.

정보의 집중은 비단 과학기술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연구들도 점점 대규모화하거나 전문적이 되고 있어서,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5) 학술연구의 공공적 성격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인적, 물적 자원, 시간 등의 측면에서 공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과학기술분야와 더불어 인문사회학에도 상당한 액수의 연구비가 주어져 있으며, 신기술에 정부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물론 모든 연구자가 공적 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이나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가 점점 대형화되고, 그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이 정교화 됨에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연구 프로젝트는 국가나 거대 기업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공적 자금은 결국 세금이거나 기업에 투자한 개인들의 돈이므로 그것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가 자신들의 연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성찰과 책임 있는 태도를 지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학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좀 더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다. 인문학의 경우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보다 학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학문의 특성상 학자 개인의 신념이 투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비를 받았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어떤 식으로 요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사회적 책임이 법적 책임이기 이전에 도덕적 책임이다. 학문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6) 사회적 책임의 내용

연구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문가적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전문가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각종 정책을 마련하거나 법정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요구되는 전문가 조언은 철저하게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세계화의 문제, 빈곤의 문제, 인구 문제, 위험의 문제, 교육의 문제 등 전문가적인 학술연구에 의해 초래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은 수도 없이 많으며 자신들의 일이 이러한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책임있는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올바른 가치관⁷⁾

400여 년 전 Francis Bacon(2002, p. 78)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오류는 지식의 최종 목표, 혹은 지식의 가장 심원한 목표를 오해하거나 그릇되게 설정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학문과 지식을 추구하려는 욕망에 빠져든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때로는 천성적 호기심과 캐묻기 좋아하는 기질 탓이었고, 때로는 색다른 것,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그들의 정신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으며, 때로는 과시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이다. 지식과 학문이 그들로 하여금 기지를 발휘하고 반론을 제기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장 흔하게는 사람들은 돈벌이와 전문직을 위해 학문과 지식에 대한 욕망에 빠져든다.”

라고 언급하면서 연구자가 진리추구라는 학문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 학문이 자기 망각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⁸⁾

오늘날 다수의 대학교와 연구소는 연구자들에게 순수한 연구의 열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기업이나 기관이 원하는 연구결과만을 산출해내도록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더욱이 양적인 연구업적을 우선시하는 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연구 성과와 업적을 위해서는 연구윤리에서 멀어지는 줄을 알면서도 혹은 그에 대한 지식부재로 업적 부풀리기나 표절, 혹은 자기중복게재 등의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면서 학문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연구자에게 연구업적을 산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때로 연구자로 하여금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면서 연구윤리를 위반하게 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여 연구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끊임없이 우수한 연구결과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연구자가 연구를 계획하여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연구의 윤리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연구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연구자는 진실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연구를 수행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결과나 성과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연구진실성을 고양하면서 연구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의 가치를 준수해야만 한다.

7) “책임있는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올바른 가치관”, <연구윤리정보센터>, 2012. 08. 16., <http://www.cre.or.kr/article/responsibilities_articles/1383111>(접속일: 2016. 01. 06)

8) 하병학, 「탐구와 소통의 학문하기와 학습윤리교육」, 『사고와 표현』 제2집 1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9, 7-34쪽.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한 공동의 가치로는 정직성(honesty), 정확성(accuracy), 효율성(efficiency), 객관성(objectivity)을 들 수 있다.⁹⁾

정직성(honesty)은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정확성(accuracy)은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오차를 피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효율성(efficiency)은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객관성(objectivity)은 사실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밝히고 부당한 편견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연구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책임 있는 연구를 통한 연구진실성을 확보해야 진리탐구라는 학문의 본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진실성이란 연구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서 부주의나 잘못된 지식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인 오류나 위조, 변조, 표절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한다.

더 넓게 파악하면, 차후에 연구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구과정에서 발견되거나 도출한 각종 아이디어, 연구방법, 데이터 및 현상들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충실히 보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¹⁰⁾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과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학문적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3. 올바른 연구비 집행¹¹⁾

— 사례 —

△△△△△△△ 주식회사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국내에서 결제한 연구비 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기관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주점인 “○○”(서양음식점으로 등록)에서 술을 마시고 2008년 7월 21일 23시 경에 30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42건 5,545만 원 가량을 심야시간(23~5시) 주류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내부인원 간의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이 심야시간에 이용한 업소 및 주류와 관련된 상호를 가지고 있는 업소에서 23시 이전에 사용한 금액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36건 1,718만 원 가량이 부당집행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부당집행 한 연구비를 환수조치하고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규정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참여제한 조치를 하였다.

9) 교육인적자원부·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 윤리 소개』, 2006, 7쪽.

10) 이인재,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 『윤리교육연구』 Vol.21, 한국윤리교육학회, 2010, 269-290쪽.

11)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2014. 2-3쪽.

(1)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 및 지침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비율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연구비에 대한 관심과 연구비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집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전적인 유혹에서 벗어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기본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지원사업)의 연구비 관리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학술진흥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 단계에 따라 연구비 집행·관리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기 준	인문사회 분야	과학 기술 분야
법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기본법
대통령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진흥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훈령·지침·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 인건비 관리 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가이드 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매뉴얼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119 • 사업별(HK, SSK, 학술연구교수 등) 관리지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매뉴얼

(2) 연구개발비 사용원칙 및 제한

1) 연구개발비 사용원칙

- ①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 당초 연구계획서 작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후 필요 연구비를 정확히 계상함
- ②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함
- ③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 연구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함이 원칙임
- ④ 증빙자료의 객관성
 - 연구비 집행은 객관적인 서류(지출결의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구비를 통해 증빙하며, 증빙자료는 당해과제 연구종료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함

(3) 부당집행 사례

1)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 사례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집행]

○○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교수)에서는 “△△△△ 연구개발 사업단” (총사업비 30억 원, '12년도 6억 원)을 운영하며, ○○○과 위탁계약을 체결 (1,000만 원 규모)하였다. ○○○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위탁사업기간 및 본 연구과제가 끝나는 시기 까지 위탁사업비에 계상된 인건비(3명, 812만 원)를 포함하여 882만 원이 미집행 된 상태였다.

정산 과정에서 미집행액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연구원(3명) 인건비를 집행하고 계좌이체 내역서를 첨부하였으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연구기간 이후 집행된 882만 원을 부당집행액으로 판단하여 회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외 참고 사례(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주) □□는 2010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출연금 7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연차평가 결과 계속과제로 판단되어 2011년 연구비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주) □□는 2011년 7월 소속 연구원 전원 변경을 요청하고 7월 중순부터 8월초 사이에 원가계산서 제출 없이 시작품 제작, 기기구입 등에 대한 연구비를 집행하였다.

(주) □□ 소속 연구책임자는 2011년 7월 연구비 6,363만 원 상당을 시작품 제작 비용 명목으로 입금하고 다음날 본인의 계좌로 6,300만 원을 돌려받아 소속 기관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비슷한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자재대금 납부, 공과금 납부 등 회사운영비에 총 2억 3,3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주) □□의 제재조치 평가단을 운영하여 (주) □□ 및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 4년을 부과하고 2차년도 연구비 전액을 환수조치 하였다.

<그외 참고 사례(2)>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 구축장비 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책임자 ○○○은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 △△△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 5,0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부과정 연구원을 석사과정 연구원인 것처럼 꾸며 인건비 1,965만 원을 초과로 계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은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있는 “○○○○○○○○○○장비 개발”과제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석사과정 학생을 박사과정인 것으로 꾸며 인건비 135만 원을 초과로 계상하였다.

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연구책임자에 참여제한 조치를 부과하였고, 부당하게 집행된 외부인건비 7,109만 원을 환수토록 조치하였다.

2) 인건비 부당집행 사례

— 사례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대학교의 △△△교수는 자신이 연구책임자 및 수석연구원인 연구과제에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을 참여연구원 등으로 등록한 후,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및 여비 2억 9,679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내장학금 등 연구과제수행과 관련이 없는 6,306만 원까지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교수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억 5,985만 원 중 1억 8,711만 원 등을 2008년부터 3년간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차액은 외국인학생 식대 및 교통비, 연구과제 수주활동비, 연구기자재 구입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85만 원은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고, 2,073만 원은 사용처를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부당집행 금액은 환수 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주고 △△△는 참여제한 조치를 하였다.

<그외 참고 사례>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대학교의 감사결과 ○○○가 2010년 3월부터 9개월 동안 참여연구원 인건비 2,437만 원을 공동관리하여 그 중 2,168만 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잔액인 269만 원은 환수조치하였고, ○○○는 참여제한 3년을 부과하였다.

한편, ●●●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참여연구원 인건비 8,494만 원을 공동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비 잔액 3,964만 원을 환수조치 하고, 2011년 수행 중이던 과제에 대한 연구비 집행을 중지하는 한편 ●●●에 참여제한 3년을 부과하였다.

3) 학생인건비 부당집행 사례

— 사례 —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월별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될 수 없다. 그러나 □□대학교에서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수행된 연구 과제에서, 일부 학생연구원에게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1,525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 1,525만 원을 회수하였다.

<그외 참고 사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서는 학사과정 학생연구원에게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 중 보조원(229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 인건비를 계상·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회수하였다.

4) 연구장비 · 재료비 부당집행 사례

— 사례 —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주)□□□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3차년도 연구개발기간 중에 ◆◆◆◆◆◆◆◆◆◆로부터 1,000만 원에 '복합기'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기는 2012년 6월 27일에 검수되어 연구개발과제 종료일(2012년 5월 31일) 이후인 2012년 7월 2일에 입고되었다. 따라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금액인 1,000만 원을 회수하였다.

<그외 참고 사례(1)>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연구원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억 4,000만 원 규모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정산과정에서 연구기간 중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기자재(외장하드, USB 등)을 구입하는데 19만 원을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금액인 19만 원을 회수하였다.

<그외 참고 사례(2)>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대학교의 연구책임자 ○○○은 2011년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 소프트웨어인 Adobe Acrobat을 구입하였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 정산 시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인 63만 원을 회수하였다.

5)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사례

— 사례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별 수행기관 내에서의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일부부처 제외).

그러나 주관연구기관인 A기관과 B기관은 참여연구기관 소속 직원에게 각각 1,700만 원, 500만 원을 전문가 활용비 및 멘토비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참여연구기관인 C기관은 내부직원에게 1,200만 원의 멘토비용을 지급하였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들은 동일 사업 내에서 각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과제가 ○○설비 관련 과제, ○○부품 관련 과제로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관 부처의 경우 단일과제의 수행기관 간(주관기관↔참여기관, 참여기관↔참여기관) 거래뿐만 아니라 총괄·세부과제(세부과제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수행기관 간의 전문가 활용비 지급 등 거래를 불허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간 거래금액인 3,400만 원을 회수하였다.

<그외 참고 사례>

[(국외 출장여비)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류지역 외 사용금액]

○○대학교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은 ○○○은 2012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국외출장 기간이 1일 단축되었음에도 1일분에 해당하는 국외여비를 반납하지 않았고, 2013년 정산과정에서 해당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1일분에 해당하는 국외여비 49만 원을 회수하였다.

4. 이해의 충돌

(1) 이해충돌의 정의¹²⁾

이해충돌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두 가지 상충하는 이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한 가지 이해를 위해 다른 이해를 포기하거나 무시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해충돌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소위 '전관예우'를 들 수 있다. 큰 로펌들이나 회사들은 갓 퇴임한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하여 행정부나 사법부의 판단에 일정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퇴임 공직자 뿐 아니라, 그들의 로비를 받는 공무원이나 법관들도 이해충돌의 상황에 접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에는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연구윤리에서의 이해충돌은 수행하는 연구가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놓이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주는 연구비를 받아, 층간소음이 심리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거나, 통신회사의 지원을 받아 통화품질 만족도 조사를 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12) 한국과학기술지편집인협의회·한국연구재단,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94-96쪽.

금전적 이익과 같은 구체적인 이해관계나 그러한 이해관계를 약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정한 편향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입장을 배척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실증과학의 연구에서 객관적인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해충돌은 올바르게 객관적인 연구결과 산출 저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해충돌이 연구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자신이 목표로 하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떠한 다른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다. 조사나 실험에 있어서 특정한 이해관계가 편견이나 편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이해관계가 실제로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이해충돌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심에 거리는 일이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도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할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2) 이해충돌의 유형¹³⁾

이해충돌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금전적인 이해충돌과 비금전적인 이해충돌을 가장 큰 틀에서의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18조를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서울대학교연구윤리지침(2010) 제 18조 (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② **인간 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③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④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 활동 등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 ⑤ **기타의 이해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13) 한국과학기술지편집인협의회·한국연구재단,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96쪽.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있는지 여부에 의한 구분도 가능하다. 1차 이해와 2차 이해가 서로 명백히 충돌하는 경우와 두 이해가 직접 충돌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다.

이 구분은 이해충돌의 상황에 대한 것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연구부정으로, 즉 1차 이해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이해충돌이 유발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관련 분야의 연구자에게 특강료나 원고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향후 연구자가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효과를 검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잠재적인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1차 이해와 2차 이해가 충돌하지 않는데도, 표면적으로는 이해충돌이 있는 것 같은 상황도 있다. 표면적 이해충돌을 외부의 오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연구의 신뢰성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좋은 연구라는 1차적 이해가 개인과 집단의 2차적 이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모든 이해충돌 상황은 개인 뿐 아니라 집단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3) 이해충돌의 사례와 해결 예시¹⁴⁾

앞서 살펴본 이해충돌의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그에 따른 사례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금전적 이해충돌	비금전적 이해충돌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있음		A	B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없음	잠재적 이해충돌	C	D
	표면적 이해충돌	E	F

14) 한국과학기술사신평의회·한국연구재단,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100-102 쪽.

1) 돈 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이해충돌(A)

— 사례 —

- ① 자신의 연구와 관련하여 구입할 예정인 기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해결방안(개인): 본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밝히고, 기자재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음.
 - ⇒ 해결방안(기관): 연구기관은 기자재 선정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관련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밝힐 것과, 보유 주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선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그외 참고 사례>

- ① 담배의 유해성 검증 연구를 담배 회사의 연구비를 받아 수행하는 경우
 - ⇒ 해결방안(개인) : 연구를 미수행 혹은 연구비를 제공한 회사를 명확히 밝힘.
 - ⇒ 해결방안(기관) : 학술지 발행 학회는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제공한 기관이 있으면 논문 심사와 게재 시 이를 밝히도록 요구함.
- ②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가 A 회사와 경쟁관계 있는 B 회사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 ③ 자신의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④ 정부 과학기술 정책 자문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첨단기술을 개발에 착수한 한 회사로부터 사외이사 제안을 받은 경우
- ⑤ 대학 강의실 개선 사업의 책임자로 입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친척이 소유한 회사를 선정하는 경우

2) 돈 문제가 관련되지 않은 실질적인 이해충돌(B)

— 사례 —

- ①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와 거의 유사한 연구에 대한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 ⇒ 해결방안(개인): 논문심사를 거절하거나, 학술지의 편집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함.
 - ⇒ 해결방안(기관):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

<그외 참고 사례>

- ① 자신이 지도한 졸업생이 후보자로 지원한 대학의 교수 임용 외부 심사자가 된 경우
 - ⇒ 해결방안(개인) : 외부 심사자가 될 것을 거절함
 - ⇒ 해결방안(기관) : 대학은 외부 심사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마련
- ② 자신의 과거 지도교수의 아들, 딸이 타 대학의 교수임용에 지원했을 때 외부 심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 ③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 타당성에 대해 연구 의뢰를 받은 경우 (향후 장관 등의 대가가 기대되는 경우)
- ④ 승진을 앞둔 자신의 동생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화학약품 처리 관리 관련 감사 업무를 자문하게 된 경우

3) 돈 문제와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충돌(C)

— 사례 —

① 자신이 곧 있을 국가 프로젝트 심사위원이 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에 응모할 예정이라는 연구소의 특강 초청과 높은 강연료를 제안 받은 경우

⇒ 해결방안(개인): 특강 초청에 응하지 않음. 이미 응한 경우라면 프로젝트 심사위원을 맡지 않거나 심사를 부탁한 기관에 자신의 특강 사실을 밝힘.

⇒ 해결방안(기관): 연구비를 제공하는 국가 기관은 프로젝트 심사위원의 선발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② 제약 회사가 특정 약학 관련 학회의 학술지를 대거 구입하여 학회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경우

⇒ 해결방안(기관): 학회원들과 해당 제약회사에 그와 같은 기여가 학회원들의 연구진실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학회 재정이 해당 제약사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조정

<그외 참고 사례>

① 자신이 연구비를 수주한 기업의 임원 아들, 딸이 자신이 있는 대학의 대학원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4) 돈 문제와 관련이 없는 잠재적인 이해충돌(D)

— 사례 —

① 학부 내에서 연구 전임 신임 교수 임용을 계획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전공 적합도와 무관하게 여성은 임용하지 않는다는 내부적 합의를 하는 경우

⇒ 해결방안(기관): 성에 따른 차별 등을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명확한 심사 기준을 마련

<그외 참고 사례>

① 자신의 친인척이 소유한 제약회사의 제품에 대한 약품 효능검사를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하게 되는 경우(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음)

⇒ 해결방안(개인) : 자신과 해당 제약회사와의 관계를 밝히고 해당 검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 해결방안(기관) : 검사자의 자격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② 자신이 속한 학회 회원의 표절 시비에 대해 검증을 하게 된 경우

③ 대학이 추진하는 연구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제자를 교수로 영입하는 경우

5) 돈 문제와 관련된 표면적인 이해충돌(E)

— 사례 —

① 급작스러운 경제적 문제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을 최근 남몰래 처분했는데 그 직후에 연구기자재 구입 입찰 과정에 A사가 지원한 경우

⇒ 해결방안(개인): 평가 전 본인의 해당 회사 주식 매각 사실을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알림

6) 돈 문제와 관련이 없는 표면적인 이해충돌(F)

— 사례 —

① 최종 후보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이 나온 고등학교의 까마득한 후배임을 모르고 중대한 연구 프로젝트 심사에 임한 경우

⇒ 해결방안(개인): 심사에서 개인의 인적 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후보들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피함.
